

[붙임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 연구소/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요약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조 세 지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
	통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를 추가공제(기본 공제금액의 2배 한도)함 - 기본공제 [(해당연도 설비 투자액×(1~10%))+추가공제 [(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3년 연평균 투자액)×3%]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10%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3% 대 기 업: 설비투자 금액*1%	○	○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 부서
조 세 지 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대상기술이 같은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가능	○	X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관 세 지 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인 력 지 원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X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
자 금 지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 (ATC+)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사업신청자격 부여)	○	X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기 타 지 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X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기간제법 제4조) <고용노동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전문 연구사업자 지원 정책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초연구사업우주기술개발사업원자력 연구개발사업핵융합 가속기연구 지원사업정보통신방송연구 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에너지 기술개발사업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ESP(기술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설기술연구사업플랜트 연구사업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철도기술연구사업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농생명산업 기술개발첨단생산 기술개발포스트게놈 다부처유 전체사업

* 미반영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 국가 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참고

○ 국가 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 조세지원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 연구인력 지원제도

-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법”에 대하여 신규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 금융지원

- 기술보증제도, 기술평가제도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 또는 무험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